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0. 7. 15.(수)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교육청 걱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0년 6월 29일
- 회부일자: 2020년 7월 2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걱정규모학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걱정규모학교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 학교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교부액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 수익금, 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안 제5조),

 -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설치하여(안 제4조),

 -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통폐합 학교나 이전 재배치 학교 등에 대한 직접 지원),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그 밖에 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음(안 제6조).

- 본 조례 제정 이전에는 통폐합 학교 등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교부를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교부하는 형태로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지원 방식은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이 설치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부족 등 재정 여건 변화에 관계없이 통폐합 학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6조에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제1호)외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경우 기존 통·폐합 학교나 이전 재배치 학교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 앞으로 교육청의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나 동문회 등의 호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